

- 자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
9.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(자영 예술가는 제외한다)
10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, 국제회의업 및 테마파크업
11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
12.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
13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
14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
15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
16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
17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업
18.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
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
- 나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
- 다.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
19.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
20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(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21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
22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및 관광펜션업